

## 중국의 자원수출제한조치와 WTO 규칙 부합성에 관한 분석

유 예 리\*

- 
- I. 문제의 제기
  - II. 중국의 수출상품관리제도 분석
  - III. 중국 자원수출제한조치의 WTO 규칙 위반여부
  - IV. 중국의 대응과 한국에의 시사점
- 

### I. 문제의 제기

본고는 GATT 1994<sup>1)</sup> 제 20조 (g)호가 규정하는 자원보존조치의 법률조건

---

\* 중국 칭화(淸華)대학교 법학원 국제경제법 박사과정 수료

1) GATT는 규칙과 다자간 협정들의 집합으로서 법률적인 성격만 있었고 국제기구적인 성격은 없었다. 종래 GATT는 상품교역에만 적용되어 온 반면에 WTO는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교역, 지적소유권 분야에 이르기까지 적용범위를 넓혔다. 1947년에 만들어진 GATT(GATT1947)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에서 수정되고 보다 명료화되었는데 이렇게 수정된 GATT(GATT1994)는 WTO의 한 구성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GATT는 WTO체제 하에서도 여전히 국제무역을 규율하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과 비교하여 중국의 「대외무역법」 제 16조가 비교적 완화되어있고, 심지어 GATT 1994 제 20조 서문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이 결여되어 있어, 향후 중국의 자원수출제한조치와 관련하여 무역 분쟁의 소지가 높은 만큼 관련 조문의 영문 및 중문 해석과 주요사례를 통하여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1994년 중국 「대외무역법」 제 16조 자원보존조치 관련 규정<sup>2)</sup>이 GATT 1994 제 20조 서문과 (g)호<sup>3)</sup>를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중국대표는 「WTO가입의정서」 제 162절에서 “중국은 향후 비자동수출허가증 절차와 수출제한과 관련된 WTO 규칙을 준수할 것이며 향후 「대외무역법」이 GATT 요구에 부합하도록 할 것임”<sup>4)</sup>을 확인하여야 했다.<sup>5)</sup> 그러나 2004년 대폭 수정된 중국 「대외무역법」 제 16조 제 4항은 1994년 「대외무역법」 제 16조 제 2항과 마찬가지로 “국내 공급이 부족하거나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 국내자원 보호를 위해 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sup>6)</sup>만을 규정하여 중국이 WTO 가입 후에 수정된 「대외무역법」 역시 GATT 1994 제 20조 서문과 (g)호의 요구에 여전히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sup>7)</sup>

그동안 에너지, 자원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자원보존과 관련한 중국의 국내법적 대응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전무하여 향후 한중간의 자원분쟁에 대비한 준비가 부족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중국이 자국의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우리나라가 중국에 의존하는 주요 자원을 중

2) 1994년 7월 1일 시행된 중국 「대외무역법」은 중국 대외무역의 기본법으로 「대외무역법」과 WTO일반예외조항과 관련 있는 조항은 제 3장(화물수출입과 기술수출입) 제 16조 1, 2, 5항, 제 17조 제 1, 2, 3항, 제 21조; 제 4장(국제서비스무역) 제 24조 1, 2, 5항, 제 25조 1, 3항; 제 5장 제 27조 1, 2항; 제 7장(법률책임) 제 38조, 39조와 제 40조이다.

3) GATT 1994 제 20조 (g)호 다만 동조치가 국내의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유효한 경우에 한한다.

4) 中国代表确认, 中国将遵守有关非自动出口许可证程序和出口限制的WTO规则, 也将使「外贸法」符合GATT的要求

5) 중국 「WTO가입의정서」와 실무보고서는 수량제한, 즉 쿼타와 허가증관리에 대해서 중앙정부만이 비관세조치에 관한 법규를 공포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는 중앙정부 혹은 중앙정부가 수권한 지방 각급 주관기관만이 시행 혹은 집행할 수 있음을 약속하였다.

6) 国内供应短缺或者为有效保护可能用竭的国内资源, 需要限制出口的

7) 2004년 중국 「대외무역법」중 자원보존규칙과 관련 조항은 제 16조 2항, 4항, 제 26조 2항과 제 61조 1항이다.

국이 자원보존조치의 명목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은 단순히 한중 양국의 무역 분쟁이라는 문제를 넘어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중국의 수출제한조치 관련 법률과 법규가 WTO 규정에 위반여부를 분석하고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할 것이다.

GATT 1994 제20조에 의해 취해진 조치는 아무런 통보의 의무도 부과되어 있지 않아 가장 남용 우려가 큰 조항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한중 자원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본고는 먼저 중국의 수출상품관리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II). 다음으로는 중국의 코크스수출제한조치로 인해 EU와 발생한 주요 사례를 통하여 중국의 자원수출제한조치가 WTO 관련 규정과의 충돌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III). 끝으로 중-EU 간의 코크스무역 분쟁<sup>8)</sup>에서 중국과 EU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고, 중국의 자원수출제한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알아봄과 동시에 우리의 대응방안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본고를 끝맺고자 한다(IV).

## II. 중국의 수출상품관리제도 분석

중국은 국가규정으로 수출수량을 제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쿼터(export quota)관리를 하고 그 밖의 수출제한 상품은 수출허가증(export licence)관리를 한다. 수출쿼터관리는 개별적 상품의 수출량을 정책적으로 규제하는 제도이고 수출허가증관리는 수출허가의 유효성을 규제하는 것이다. 수출쿼터관리나 수출허가증관리 대상품목은 모두 허가증<sup>9)</sup>이 있어야 수출이 가능하다. 중국 수출입관리제도는 수출상품관리, 수입상품관리와 수출입검사제

8) WTO시기(1995년 이후) GATT 제 20조 (g)호와 관련 있는 사건은 United States - 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DS2), United States - 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DS58)이다. 중-EU 코크스 분쟁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 분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례이다.

9) 수출허가증이란 법률과 행정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출제한상품의 수출을 허가하는 성질을 갖는 각종 증명과 문서를 가리킨다.

도로 구성되는데 본고에서는 자원수출제한조치와 관련 있는 수출상품관리제도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며, 특히 2008년도에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2008년 수출허가증관리상품목록을 중심으로 중국의 수출제한조치와 그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수출쿼터관리

중국은 「대외무역법」, 「화물수출입관리조례」, 「수출상품쿼터관리관법」<sup>10)</sup>, 「수출상품쿼터입찰관법」<sup>11)</sup> 등 법률, 법규와 규장의 규정에 근거하여 일부 상품의 수출입에 대하여 쿼터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sup>12)</sup> 중국 상무부는 전국 상품의 수출입 쿼터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쿼터 관리 상품목록을 공포한다. 수출상품의 쿼터 관리는 수출쿼터입찰공고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수출기업은 자주적으로 경쟁에 참가하여 국가가 확정한 수출 상품 쿼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의 수출상품관리는 스스로 수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제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능동적 할당(quota)과 상대국이 중국 상품 수입량을 제한함으로써 인한 피동적 할당으로 구분된다.<sup>13)</sup> 능동적 할당은 다시 국민경제에서 중요하거나 수출 비중이 큰 계획할당과 중국의 해외시장 점유율이 높은 수출 상품들 간의 과당경쟁을 피하고 안정적 수출을 위하여 정한 주동할당 및 수출액이 많고 수출관리에 혼란이 예상되는 특산품과 같은 일반허가관리 상품으로 세분된다. 계획할당 상품은 통일적 연합 관리 상품 16종과 허가증에 의한 관리 상품 22종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주동할당 상품은 지역별로 홍콩·마카오에 23종, 일본에 14종, 3개 이상 국가(지역)에 17종이 배분되어 수출되고

10) 「出口商品配额管理办法」(2001.12.20 공포, 2002.1.1 시행).

11) 「出口商品配额招票办法」(2002.12.20 공포, 2002.1.1 시행).

12) 그 외에도 중국은 특정상품의 수출을 관리한다. 「기전산품수출입찰관법(机电产品出口招票办法)」(2001.12.20 공포, 2002.1.1 시행)에 근거하여 기계와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을 장려하고 합리적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찰관리방법을 쓰고 있으며, 「대형기계와 플랜트 수출항목 협조관리관법(大型单机和成套设备出口项目协调管理办法)」(2002.1.1 시행)에 근거하여 2002년부터 수출액 100만 달러 이상의 대형기계와 200만 달러 이상의 플랜트의 수출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13) 이춘삼, 『중국통상법』, 대왕사, 2004, pp.259-260.

있다. 일반허가증관리 상품은 22종이고 피동적 할당 상품은 방직품이 19종, 非방직품이 5종이다.

피동적 할당 상품과 계획적 할당 및 주동적 할당 대상이 되는 수출품은 대개 유상입찰에 의하여 수출량을 기업에 배정된다. 이밖에 중국은 기계와 전기 제품의 수출을 장려하고 합리적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찰 관리 방법을 쓰고 있다.

## 2. 수출허가증관리

중국의 수출입상품에 대한 관리제도는 1992년 말까지는 국가가 모든 수출입품을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분류하여 각기 다른 무역회사가 수출입을 맡게 하였고, 그 중 일부 품목은 국가의 계획관리 대상으로 대외경제무역부가 직접 통제하였다.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상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적극적 제도(positive system)의 국가계획무역은 1992년 12월에 「수출상품관리 임시조치(出口商品管理暂行办法)」가 공포됨에 따라 종전의 수출상품 분류제가 폐지되고 소수 상품에 대해서만 국가의 관리를 받게 하는 이른바 소극적 제도(negative system)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수출허가증관리상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3년에 138종에서 114종으로 줄었고 2000년에 73종이었으며 2004년에는 50종, 그리고 2008년 상무부가 발표한 올해 수출허가증관리 대상품목은 47종(<표1>참고) 471개 품목(HS Code 8단위 기준)이며 이들 제품에 대해 수출쿼터 허가증이나 수출쿼터입찰·수출허가증관리가 적용된다.

중국 수출관리의 주요수단인 수출허가증관리<sup>14)</sup>는 2004년 「대외무역법」과 2002년 국무원이 공포 시행한 「화물수출입관리조례」<sup>15)</sup>를 근거하여 관리가 이루어진다. 중국의 「수출허가증관리규정」<sup>16)</sup>에 따라 수출제한조건 중 어느

14) 수출입허가증관리제도란 국가가 일부 상품에 대해 반드시 국가주관부문이 서명 발급하는 수출입허가증을 수령하여야 만이 수출입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수출입허가증제도는 화물수출입에 대한 가장 중요한 수량제한조치로서 수출입쿼터관리제도 역시 직접 화물수출입 수량에 제한을 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일부 상품의 수출입 수량 혹은 금액에 대해 실시하는 일종의 직접제한이다.

15) 중국 국무원, 「中华人民共和国 货物进出口管理条例」(2001.12.10 공포, 2002.1.1 시행).

한 조건에만 해당하면 수출쿼터허가증 혹은 수출허가증관리를 시행하게 된다.<sup>17)</sup> 수출제한조건이란 1) 국가안전이나 사회의 공공이익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제한이 필요한 것 2) 국내공급이 부족하거나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 국내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제한이 필요한 것 3) 어떠한 형식의 농업·목축업·어업제품에 대해 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 4) 중국이 체결한 국제조약과 협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출제한이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수출허가증주관기관인 중국 상무부는 전국 수출허가증 집중관리부서로서 매년 수출허가증관리상품목록을 발표하고 향후 수출허가증 관리규정의 시행 상황을 검사, 감독할 뿐만 아니라 규정위반행위를 처벌하게 된다. 상무부로부터 수권 받은 발급기관은 수출쿼터 입찰관리 대상목록품목에 대해 상무부로부터 하달 받은 낙찰기업 리스트 및 기업별 낙찰수량과 입찰관공실이 발급한 ‘쿼터입찰품목의 수출허가증증명신청서’에 따라 수출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출허가증은 한 세관에서 한 허가증만을 사용하게 하거나(일관 일증, 一关一证) 유효기간 안에 허가증을 한번만 사용하게 하는 방법(일비일증, 一批一证)으로 관리된다. 중국의 현행제도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보상무역의 수출허가증관리상품에 대해서는 일비일증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외국인투자기업과 보상무역의 수출허가증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한, 최대 12회 까지 사용이 가능하다.<sup>18)</sup>

---

16) 「出口许可证管理规定」(2001.12.20 공포, 2002.1.1.시행).

17) 이춘삼(2004), p.276.

18) 「수출허가증관리규정」 제 11조.

<표1> 2008년수출허가증관리상품목록19)

|                 |  |
|-----------------|--|
| 수출쿼터허가증<br>관리상품 | 옥수수·쌀·밀·옥수수가루·쌀가루·밀가루·면화·제재목·산 황소(홍콩과 마카오대상)·산 돼지(홍콩과 마카오대상)·산 닭(홍콩과 마카오대상)·실크류·석탄·코크스·원유·가공유·희토·안티몬 및 그 제품·텅스텐 및 그 제품·아연광사·석 및 그 제품·백은·인듐 및 그 제품·몰리브덴   |
| 수출쿼터입찰 품목       | 등심초 및 그 제품·탄화규소·불석덩어리(가루)·활석덩어리(가루)·경소마그네시아·반토·감초 및 그 제품   |
| 수출허가증관리상품       | 산 황소(홍콩과 마카오 제외)·산 돼지(홍콩과 마카오 제외)·산 닭(홍콩과 마카오 제외)·냉동 신선한 소고기·냉동 소고기·냉동 신선한 돼지고기·냉동 돼지고기·냉동 신선한 닭고기·냉동 닭고기·오존층파괴물질·파라핀·아연·일부 금속 및 그 제품·백금(가공무역방식 수출 <sup>20)</sup> )·자동차(완성차구성을 띤 부품포함) 및 새시·오토바이 및 엔진과 차체프레임·천연사·몰리브덴 제품·레몬산 |

중국은 국무원의 비준을 얻어 2007년 12월 29일 상무부가 발표한 바와 같이 2008년 1월 1일부터 옥수수·쌀·밀·옥수수가루·쌀가루·밀가루·면화·제재목·산 황소·산 돼지(홍콩과 마카오 대상)·산 닭(홍콩과 마카오 대상)·실크류·석탄·코크스·원유·가공유·희토·안티몬 및 그 제품·텅스텐 및 그 제품·아연광사·석 및 그 제품·백은·인듐 및 그 제품·몰리브덴 등 24개 품목에 대해 수출쿼터허가증관리를 시행한다. 상무부 관련 책임자는 “국제 곡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중국의 곡물 수출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수출규모를 적당히 조절하고 국내공급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국내 곡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국내 식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곡물에 대한 수출정책을 조정한다. 이 정책은 임시 정책인 것으로 국내관련 수요 공급변화에 따라 정책 시행 기한이 바뀔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sup>21)</sup> 수출쿼터입찰 품목은 등심

19) 상무부·해관총서 공고 2007년 제 101호(商务部、海关总署公告2007年第101号) 공포.

20) 가공무역은 해외에서 전체 혹은 부분 원재료·부재료·부품·포장 재료를 보세로 수입하여 국내기업의 가공 혹은 조립 등 과정을 거친 후 제조품을 다시 수출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수출쿼터 대상품목을 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할 경우 수출쿼터 및 가공무역업무 허가증과 수출계약서(정본 및 부분)가 필요하나 일부제품에 대해서는 수출허가증을 발급한다.

초 및 그 제품·탄화규소·불석덩어리(가루)·활석덩어리(가루)·경소마그네시아·반토·감초 및 그 제품 등 7개 품목이다. 수출허가증관리 대상품목은 산황소(홍콩과 마카오 제외)·산 돼지(홍콩과 마카오 제외)·산 닭(홍콩과 마카오 제외)·냉동 신선한 소고기·냉동 소고기·냉동 신선한 돼지고기·냉동 돼지고기·냉동 신선한 닭고기·냉동 닭고기·오존층파괴물질·파라핀·아연·일부 금속 및 그 제품·백금(가공무역방식 수출)·자동차(완성차구성을 띤 부품 포함) 및 새시·오토바이 및 엔진과 차체프레임·천연사·몰리브덴 제품·레몬산 등 19개 품목으로, 이외에도 옥수수·쌀·석탄·원유·제품유·면화·안티몬 및 그 제품·텅스텐 및 그 제품·백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영 무역관리<sup>21)</sup>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수출쿼타허가증관리상품 중에 옥수수·쌀·밀·옥수수가루·쌀가루·밀가루·면화에 대한 수출제한은 GATT1994 제 20조와 제 21조(국가안보 예외) (b)의 (iii)<sup>22)</sup>, 즉 식량안보와 관련되는 상품이고 석탄·코크스·원유·가공유·희토·안티몬 및 그 제품·텅스텐 및 그 제품·아연광사·석 및 그 제품·백은·인듐 및 그 제품·몰리브덴의 수출제한은 GATT1994 제 20조 (g)와 관련된다. 2006년 11월 1일부터 중국이 수출세를 상향조정 한 제품 가운데 희토류, 목재, 석탄, 광산물 등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자원의 경우 대중국 수입 감소는 물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sup>24)</sup> 세계 곡

21) 『在线国际商报』, 粮食制粉实行出口配额许可证管理 <http://www.wtolaw.gov.cn> 2008-01-02(검색일: 2008.3.27)

22) 국영무역은 GATT 제 17조 국영무역관리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중국은 「WTO 가입 의정서」에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였다.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식량·면화·식물유·설탕·원유·가공유·화학비료·연초 등 8개 상품의 수입과 차·쌀·옥수수·콩·텅스텐과 그 제품·석탄·원유·가공유·실·면화 등 상품의 수출에 대해서는 국영무역관리의 권리를 보존하였다. 이외에도 식물유(콩기름·종려유·유채유)의 국영무역관리는 2005년 1월 1일 취소되고 1994년의 GATT 국영무역의 규정을 준수하여 국영무역회사는 상업고려에 따라 경영하여야 할 것이고 관련 통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관련 국영무역기업수출화물 가격체제의 모든 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23) 식량안보는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s: NTC)의 일부로서, 농업부문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NTC의 중요성이 그 어느 국가보다도 크다. GATT 제20조(일반적인 예외사항)는 비록 NTC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NTC의 가치가 수용되어 있고, 제 21조(국가안보 예외) (b)의 (iii) 역시 전시 또는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그 밖의 비상시에 취하는 조치(taken in time of war or other emergency in international relations) NTC의 가치를 수용하고 있다.

24) 양평섭, “최근 중국의 수출관련정책 변화와 한·중 교역에의 영향”, 중국이슈리포트,

물가가치가 치솟고 있고, 우리나라가 상당량의 곡물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향후 한중 FTA가 체결되면 더욱 많은 중국농산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본고 제 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은 「수출허가증관리규정」에 의하여 어떠한 형식의 농업·목축업·어업제품에 대해 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이면 수출쿼터허가증 혹은 수출허가증관리를 시행하게 된다. 또한 일부 암석과 원유는 우리나라 반도체의 핵심부품이자 생산비용을 높여 국제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수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sup>25)</sup> 따라서 EU가 중국에 이의를 제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중국에 이의를 제기하여,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대외무역법」 개정에 영향을 끼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한중간에 자원무역 분쟁 발생의 소지가 높은 만큼 우리나라는 매년 연말에 발표되는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증관리상품목록을 중국의 자원수출 제한조치와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GATT1994 제 20조 서문과 (g)에 어긋나는 조치일 경우에는 분쟁의 실익을 따져 WTO에 제소해야 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대외무역법」 개정에 대한 적극 요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III. 중국 자원수출제한조치의 WTO 규칙 위반여부

#### 1. 중-EU 코크스분쟁 사건개요

2004년 1월 1일, 중국은 코크스<sup>26)</sup>수출에 대하여 허가증관리를 실시함과 동시에 코크스수출 쿼터를 2003년의 1200만 톤에서 900만 톤으로 감소하기로 결정하였다. 5월 24일 재정부와 국가세무국은 수출하는 코크스 등에 대해 일

---

제 2006-29호, 2006.11.23, p.21.

25) 주요 제품의 대중국 수입의존도 : 희토류(HS 2846) 68.9%, 목제품 등 40.9%, 비철금속 18.6%, 석탄류 22.3%, 철강제품 21.3%.

26) 코크스(cokes, 焦炭)는 철강생산의 주요연료로 철강 산업 투자의 활성화에 따라 점차 희귀자원이 되었다. 중국은 1996년부터 중국산 코크스 수출품의 품질에 대한 특별관리를 시작하였는데 상무부로부터 수출권을 받은 코크스 생산기업이라도 품질허가증을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를적으로 부가가치세(增值稅) 수출 환급세를 정지한다는 긴급통지를 공포하였다.<sup>27)</sup>

2004년 5월 10일 EU는 중국이 코크스에 대해 실시하는 수출제한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WTO에 중국을 제소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EU는 중국이 세계 제 1의 코크스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서 중국이 코크스 수출을 제한한다면 국제시장에서 코크스 공급은 부족해질 것이고, 코크스 가격은 2002년 79 달러/톤에서 2004년에는 450달러/톤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았다. 코크스의 국제가격상승은 EU의 제강(炼鋼) 비용을 대폭 상승시켰고 이는 건축·자동차 등 많은 다른 업종의 비용에도 영향을 끼쳤다. EU는 중국이 코크스대하여 국내 판매에 있어 유사한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실제로 EU를 비롯한 기타 WTO 회원국에 대한 차별이며 WTO의 비차별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2004년 5월 28일 중국과 EU는 코크스 무역 분쟁에 대하여 협의에 도달하였다. 중국은 EU에 2004년 코크스수출량을 전년도 수준보다 낮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수출허가제도를 계속 유지해도 좋으나 허가증 비용징수는 취소하기로 하였다. 이에 EU는 WTO에 중국을 제소하는 것을 포기하였다.<sup>28)</sup>

## 2. 주요 법적 쟁점

GATT 제 20조 (g)호는 GATT 제 1조(최혜국대우), 제 3조(내국민대우)와

---

27) 『财经报道』, 2004년5월31일. 중국의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수출보조와 동일한 효과를 가짐으로써 수출을 증대시켜왔는데, 수출환급액이 1% 감소하면 중국의 수출은 0.2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의 경우 중국의 전체 수출액은 7,620억 달러, 수출에 따른 환급액은 3,372억 위안으로 1달러를 수출할 경우 0.05위안의 환급을 받게 되며, 특히 환급의 대상이 되는 일반무역만을 고려할 경우 수출 1달러 당 환급액은 0.13위안에 달한다. 중국은 부가가치세 환급률 조정을 통해 국내 자원을 보호하고 수출구조를 고도화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비철금속은 자원 보호 차원에서 수출을 강력히 제한하고 있다(동·니켈·알루미늄·아연·석(錫)·텅스텐·기타 희귀금속·피 및 스크랩 등 가공도가 낮은 품목의 환급이 취소되고, 동·니켈 알루미늄·연(鉛)·아연·석으로 가공하는 제품의 환급률을 대폭 인하). 양평섭(2006), pp.9-13.

28) 賀小勇, 『国际贸易争端解决与中国对策研究--以WTO为视角』, 法律出版社, 2006年, p.269.

제 11조와 관련이 있다.<sup>29)</sup> 특히, GATT 제 3조 4항은 다른 계약당사자의 영토내로 수입되는 계약당사자 영토의 상품은 그 국내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정, 요건에 관하여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에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GATT 제 11조 1항은 다른 계약당사자 영토의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다른 계약당사자 영토로 향하는 상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쿼터 수입 또는 수출 허가 또는 그 밖의 조치 중 어느 것을 통하여 시행되는지를 불문하고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과징금 이외의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도 계약당사자에 의하여 설정되거나 유지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GATT 1994 제 20조는 일반적 예외(general exceptions)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 20조 (g)호는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경우에 수출을 제한할 수 있음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사례에서 중국의 코크스수출제한조치가 WTO에 부합하려면 먼저 GATT 제 20조 (g)호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sup>30)</sup> 첫째, 코크스는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可用竭的自然资源)<sup>31)</sup> 이어야 하고 둘째, 중국의 코크스수출제한조치 자체가 천연자원보존과 관련된 조치여야 하며 셋째, 동 조치가 국내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결부되어 유효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코크스수출제한조치가

29) 曾令良·陈卫东, “论WTO一般例外条款(GATT第20条)与我国应有的对策”, 法学论坛, 2001年7月5日第4期, p.41.

30) Petros C. Navroidis, Trade and Environment after the Shrimps-Turtles Litigation [J], Journal of World Trade Vol.34 No.1. p.83; 어떤 회원국의 환경정책이 그 정책이 GATT 제 20조의 서언에 부합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기 전에 GATT 제 20조 (b)와 (g)호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먼저 심사해야 한다. 재인용 刘汉鹏·赵航, “GATT1994第20条中的引言及(b)(g)款的解释”, 国际关系学院学报 2004年第5期, p.31.

31) United States-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DS58) 사건에서 WTO 상소기구는 고갈될 수 있는 자연자원의 함의에 대하여 (g)호 자체는 생명이 없는 자연자원과 생명이 있는 자연자원으로 구분하지는 않으며, 생명이 있는 자연자원은 비록 재생할 수 있을 지라도 “재생할 수 있는”자연자원과 “고갈될 수 있는”자연자원이 서로 배척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따라서 고갈될 수 있는 자연자원에는 일반의미상의 비(非)생명광산자원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에 처한 재생이 가능한 생물자원도 포함된다.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 - 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 WTO/DS58/AB/R, adopted 6 Nov. 1998, para.128-129.

WTO에 부합하려면 GATT 제 20조 서언의 세 가지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자의적 차별이어서는 안 되며 둘째,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이어서도 안 되고 셋째,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해서도 아니 된다.

따라서 본 사건의 쟁점은 중국이 자국의 「대외무역법」 제 16조 4항을 근거로 실시한 자원수출제한규정 및 조치가 GATT1994 제 20조 서언과 구체적 예외조항 (g)호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즉 중국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실시한 코크스 자원수출제한 조치가 WTO에 위반하는지 그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다.

### (1) 중국 「대외무역법」 제 16조 4항

중국 「대외무역법」 제 16조는 “국가안전·공공이익·공중도덕·사람 또는 동식물의 건강·환경보호, 황금 또는 백은 국내공급이 부족하거나, 국내자원의 고갈방지, 수출대상국가나 지역의 시장용량의 한계를 이유로 수출을 제한<sup>32)</sup>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수출경영질서의 혼란 법률과 행정법규 또는 국제조약과 협정에 의해 수출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33)</sup> 제 16조 4항은 “국내 공급이 부족하거나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 국내자원 보호를 위해(国内供应短缺或者为有效保护可能用竭的国内资源)”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국내공급부족(国内供应短缺)이란 국내시장에서 생산 혹은 소비활동에 필요로 하는 상품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컨대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설비·생활소비에 필요한 소비품에 부족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sup>34)</sup> 국내부족의 원인은 주로 산업이 불균형하게 발전 하거나 관련 산업 간의 수요 공급관계에 불균형이 생길 때 발생한다. 국내공급부족 물

32) 중국 대외무역법 제 16조 제 4항에서 말하는 제한(限制)이라는 것은 국가가 일부 품목이나 기술의 수출입에 대해 수출입의 수량이나 금액 한도액을 일정한 정도로 규정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혹은 모 물품의 대외무역경영자나 수출입에 대해 종류별로 제한을 두는 것이다. 일부품목이나 기술의 수출입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출입이 허락되고 이 범위(모 국가나 지역의 수출입 수량과 금액을 포함한다)를 넘어서게 되면 바로 수출입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른 물품이나 기술은 대외무역경영자가 경영하는 범위 내에서 수출입이 허락되며 그 경영범위 이외의 것은 반드시 사전에 필요한 심사와 비준을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수출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33) 「대외무역법」 제 16조 제 1-4항 및 10-11항.

34) 沈四宝·王秉乾 『中国对外贸易法』, 法律出版社, 2006, p.84.

자의 수출수량을 제한하는 것은, 부족현상은 경제의 건강발전에 불리하며, 상품공급의 보장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물질기초로 경제 각 부문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국가경제와 국민생활과 관련된 식량, 연료, 의약과 공업원료와 같은 기초 상품에 대해서는 국가는 반드시 국내수요를 만족시킨 후에 대외무역을 고려할 수 있다.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 국내자원(可能用竭的国内资源)은 중국의 각종자연자원을 포함하며 이들 자원은 현재와 미래의 국가이익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sup>35)</sup> 이들 자원에는 재생이 불가능한 광산자원과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식물자원도 포함한다. 이들 자원은 공업과 농업 생산의 주요 원재료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후대의 생존과 발전이 달려있으나 수요는 증가하나 그 수량은 상대적으로 늘 부족하다.

## (2) GATT 1994 제 20조

GATT 1994 제 20조는 서언과 구체적 예외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GATT 1994 제 20조 서언은 다음의 조치가 동일한 여건이 지배적인 국가 간의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계약당사자가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함을(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the sam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or enforcement by any contracting party of measures)<sup>36)</sup> 규정하고 있다.

GATT 1994 제 20조 서언은 예외조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 20조를 적용하는 회원국은 제 20조의 구체적 예외에 부합함을 증명할 의무가 있

35) 沈四宝(2006), p.85.

36) 如果下列措施的实施不会在条件相同各国间构成任意的或无端的歧视待遇, 或者形成对国际贸易的伪装起来的, 不得将本协定解释为妨碍缔约方采用或实施以下措施:

다. 제 20조는 서언은 제 20조에서 열거하는 구체적 예외사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서언에서 금지하는 것은 자의적(arbitrary, 任意的) 혹은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수단(unjustifiable discrimination, 无端的歧视待遇),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形成对国际贸易的伪装起来的)의 조치이다. 자의적 혹은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수단,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의 자원보존조치가 중국 정부의 자의적 혹은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수단인가의 여부 및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인가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 20조 (g)호는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로서 국내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결부되어 유효하게 되는 경우(relating to the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if such measures are made effective in conjunction with restrictions on domestic production or consumption)<sup>37)</sup>에 수출을 제한할 수 있음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US-Gasoline 사건에서 WTO 상소기구는 “관련된(与…有关, relating to)”의 함의는 “primarily aimed at(主要目的在于)”이며 “결부되어(与…一同实施, in conjunction with)”가 가리키는 것은 조치의 실시가 단지 수입상품의 제한뿐만 아니라 국내 상품의 제한에도 실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sup>38)</sup> 따라서 만약 국내의 유사상품에 대해서는 관련 제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단지 수입상품에만 실시한다면 그 조치는 일종의 국내 상품을 보호하는 차별인 것이다.

### (3) 중국 자원수출제한조치의 WTO 규칙 위반

중국 상무부는 중-EU 코크스 무역 분쟁 해결 과정에서 코크스를 재생이 불가능한 자원(不可再生资源)으로 보고 환경보호의 필요에 의해 코크스 생산에 제한조치를 가하는 것은 WTO 규칙에 부합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반면, EU는 2003년 12월 25일 중국 복주(福州)에서 소집된 2004년 전국 석탄주문교

37) 关于养护可用竭的自然资源的措施, 凡这类措施同限制国内生产或消费一道实施者;

38)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 – 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 WT/DS2/AB/R, 29 April 1996, pp.13-16.

역(全国煤炭订货交易)회의에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中国国家发改委) 고위층 인사가 최근 국내 수요가 급증하고 자원공급이 부족하여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장차 코크스의 수출 감소입장을 밝힌 사실, 그리고 중국이 코크스 수출은 점차 감소키로 하였으나 2003년 중국내 코크스 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해 21% 증가시켰으며 2004년 예상 생산량도 2000만 톤 증가시킨 사실에 주목하였다. EU는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코크스수출제한조치는 GATT1994 제 20조 (g)호의 후반부 “국내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결부되어 유효하게 되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것으로서 수출을 제한함과 동시에 중국 국내 생산보호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39)</sup>

하지만 중국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GATT1994 제 20조 (g)호 “与…有关”은 “主要目的在于”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의 조치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수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与…一同实施”는 대내외의 조치가 반드시 동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국내생산완화(缓解国内生产)”는 상무부의 “재생자원보호(保护再生能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무역 조치가 추구하는 주요목표가 재생자원보호라면은 WTO 규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코크스 수출제한과 동시에 국내생산량의 증가가 반드시 생산 혹은 소비 제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표명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조치의 취함과 효과의 취득 지간에 타임래그 인소의 영향이 존재할 뿐이며 GATT1994 제 20조 (g)호가 주목하는 것은 “与…一同实施”로 실시의 효과가 아니다.<sup>40)</sup>

중국이 비록 코크스수출제한조치가 제 20조 (g)호에 부합함을 입증한다 할지라도 동조치가 제 20조 서언의 조건을 중국이 만족시켰는가는 주요 논쟁이 될 수 있다. 조치의 실시는 “동일한 여건이 지배적인 국가 간의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관례에 따라 매년 12월 15일 전 중국 정부는 다음 년도의 허가증 관리 총량을 공포하게 된다. 하지만 2004년의 쿼타 발표는 우연성(偶然性)과 특수성(特殊性)

39) 彭岳, “岳中欧焦炭出口配额风波的法律方法分析”

<http://ibdaily.mofcom.gov.cn/show.asp?id=77299>(검색일: 2008.3.10)

40) 彭岳(2008), p.13.

이 있으며, 당시의 허가증 공포는 수량과 시간 양 방면에서 모두 예측가능성(可預期性)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는 제 20조 서언의 임의적, 자의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어긋나므로 중국의 자원제한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소 측의 주요 논쟁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 지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 IV. 중국의 대응과 한국에의 시사점

중-EU 코크스 무역 분쟁은 그 해결과정에서 중국 상무부의 무역 분쟁 해결방식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중국은 EU가 중국에게 수출허가 제도를 폐지하도록 요구하면서 동시에 WTO에 제소할 것임을 공언하는 방식으로 위협전략을 사용했다고 사건을 보았다. 즉, 본 사건은 코크스수출량에 관한 단순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EU가 중국을 WTO 제소하겠다는 위협으로 결국 중국과 EU 쌍방이 양보하는 방식으로 협의에 도달하였다고 본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이 EU의 WTO 제소위협에 부담을 느껴 쌍방의 양보로 협의에 도달하였지만, 중국이 차후에도 중국의 자원수출제한조치와 관련한 타국의 제소가 발생할 경우 타국의 WTO 제소가 여전히 중국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중국은 동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가이익보호를 일률적으로 견지하였다.<sup>41)</sup> 코크스의 수출은 코크스의 생산에 영향을 끼치고 생산량은 또한 중국의 국가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코크스는 중국의 국가에너지안전에 영향을 끼친다. 석탄은 중국 에너지의 주체로서 코크스는 대량의 석탄 소모를 필요로 하며 중국에서 대량 석탄소모는 동시에 코크스의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며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킨다. 둘째, 코크스는 중국의 환경보호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코크스산업은 환경오염업종으로서 중국 코크스생산은 주로 산서(山西)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미 환경오염의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코크스의 수출제한조치를 철저히 국가이익보호 차원에서 관철시킨다면 WTO에 제소당하는 것을 그다지 개의치 않을 것이므로 WTO 제소에

41) <http://www.bjwto.gov.cn/etu/newshtml/01/20050222094022.asp>(검색일 2008.3.13)

대한 법적 논리의 대비가 필요하다.<sup>42)</sup>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수출쿼터허가증관리상품 <표1> 목록 중에 옥수수, 쌀, 밀, 옥수수가루, 쌀가루, 밀가루 등 곡물에 대한 수출제한은 GATT1994 제 20조 및 21조 식량안보와 관련되는 상품이고 석탄, 코크스, 원유, 가공유, 희토, 안티몬과 안티몬제품, 텅스텐과 텅스텐제품, 아연, 주석과 주석제품, 백은, 인듐과 인듐제품, 몰리브덴의 수출제한은 GATT1994 제 20조 (g)호와 관련된다. 세계 곡물가격이 치솟고 있고, 우리나라가 상당량의 곡물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입장이다. 또한 일부 암석과 원유는 우리나라 반도체의 핵심부품이자 생산비용을 높여 국제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수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EU가 중국에 이의를 제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중국에 이의를 제기하여,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대외무역법」 개정에 영향을 끼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한중간에 자원무역 분쟁 발생의 소지가 높은 만큼 우리나라는 매년 연말에 발표되는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증관리상품목록을 중국의 자원수출제한조치와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GATT1994 제 20조 서문과 (g)호에 어긋나는 조치일 경우에는 분쟁의 실익을 따져 WTO에 제소해야 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대외무역법」 개정에 대한 적극 요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007년 12월 3일 중국에너지관공실은 ‘중화인민공화국에너지법’(의견수렴안)을 발표하고, 2008년 2월 1일까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시작하였다. 이번 ‘에너지법’(의견수렴안)의 작성을 위하여 2006년 1월 24일 국가에너지주도그룹관공실, 발전개혁위원회 등 15개 기관으로 구성된 에너지법 초안실무팀이 발족되어 작업을 진행해 왔다.<sup>43)</sup> 따라서 중국의 「에너지법」이 WTO와 「WTO가입의정서」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중국이 「에너지법」을 통하여 어떻게 자원보존에 대응하려 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법」은 환경보호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총국과 관련기구가 환경에 엄중한 영향을 끼치는 에너지상품에 대해서는 제한 혹은 금지조치 실시를 결정하도록 하고 국내 관련 산업과 단체 역시 상무부에 수출입 제한을 제청할

42) 曾令良·陈卫东(2001), p.49.

43) 정철, “중국 에너지법(의견수렴안)의 내용과 입법전망”, 지평자료, 2008.1.15  
<http://www.horizonlaw.com/korean/news/publications.html?ptype=view&idx=399&page=1&code=publications>

수 있도록 하여 상무부가 조사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상무부가 조사를 거쳐 수출입조치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실시 전에 공고하도록 하여 「에너지법」의 자원보존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강화할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동법이 GATT1994 제 20조 서언과 (g)항의 내용을 삽입하는지 여부와 상무부의 조사 후 공고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이다.

한중 FTA 체결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NAFTA 에너지규정에서는 멕시코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체약국의 GATT 제 20조 (g)호 등에 따른 에너지 및 유화제품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으려면 이전 기간의 수출 실적에 비례할 것 등의 여러 단서를 부과하고 있는 바, 멕시코와 다른 체약국간의 관계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sup>44)</sup>이나 국가안보조치에 관한 협정 제 607조가 멕시코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무나 권리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나 국가안보에 관한 협정 제 2102조는 멕시코와 다른 체약당사국들 간에서만 적용되도록 규정한 것<sup>45)</sup> 등이 그러하다. 멕시코는 1917년 헌법에서 천연자원에 대한 소유권 및 참여도 제한하였다. 그 결과 PEMEX(국영 석유 가스 기초유화)와 CFE(국영전기)가 이들 부문을 독점하고 있었다.<sup>46)</sup> 그런데 NAFTA는 에너지와 기초 유화 제품에 관한 제 6장 모두에서 “체약당사국은 자신들의 헌법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확인 한다”는 이례적인 규정을 두고 에너지 및 기초 유화 제품 부문에 대한 상술한 독점 제한 그리고 헌법적 기초를 기본적으로 바꿀 수 없었고 단지 부분적인 약속만을 이끌어내었다. 중국은 NAFTA에서의 멕시코처럼 개발도상국으로서 에너지, 자원 등 민감한 상품에 대해서 수출입허가증관리를 유지하려고 할 것인 바 우리는 한중 FTA를 통해 양국의 에너지 및 자원, 곡물에 대한 보존에 대한 신중한 규정이 필요함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에너지 영역에서 「석탄법(煤炭法)」, 「전력법(電力法)」, 「절약에너지법(節約能源法)」과 「재생가능에너지법(可再生能源法)」 외에도 대량의 행정

44) NAFTA Annex 605.

45) NAFTA Annex 607.

46) 고준성,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 법무부, 2003, pp.185-186.

법규와 지방법규를 제정하여 자국의 에너지, 자원 보호에 힘쓰고 있다.<sup>47)</sup> 미국의 경우는 에너지 기본법인 「에너지정책법안2005(Energy Policy Act of 2005)」을 마련하여 에너지관련 입법체계가 통일되어 있다. 그동안 에너지, 자원의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국내법적 대비가 부족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중국과 같이 우리도 에너지, 자원 보존 관련법을 제정하여 그 입법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국내법적 대응이 절실하다.

GATT 제 20조 서언의 “자의적” 혹은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 수단”, 그리고 “국제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의 자원수출제한조치가 자의적 혹은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수단인가의 여부 및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인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중국 상무부의 조치가 이에 부합한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GATT 제 20조 (g)는 조치의 실시가 단지 수입상품의 제한뿐만 아니라 국내 상품의 제한에도 실시되어야 함을 조건으로 함으로 중국이 자국의 대외무역법 제 16조 4항에 근거하여 국내 관련 조치 없이 수출에만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주시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자원민족주의의 강화에 대비하여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비금속광물, 비철금속, 석탄 등 주요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요 광물자원의 수입선 다변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sup>48)</sup> 중국이 자원 수출을 규제하여 희토류, 비철금속, 석탄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 국제 자원가격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인바 이에 대비하여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이 조속히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47)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에너지의 소비와 생산에 있어서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법, 석탄법, 에너지절약법 및 재생가능에너지법 외에 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기본법을 제정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개별 법률로 규율하지 못하는 에너지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기관도 분산되어 에너지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에너지 전략과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에너지 전 분야에 걸친 관계와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에너지 기본법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48) 양평섭(2006), pp.23-24.

## 참 고 문 헌

- 贺小勇, 『国际贸易争端解决与中国对策研究--以WTO为视角』, 法律出版社, 2006
- 刘汉鹏·赵航, “GATT1994第20条中的引言及(b)(g)款的解释”, 国际关系学院学报, 2004
- 蒋永龙, “WTO资源保障规则研究--以能源保障为视角”, 西南政法大学硕士学位论文, 2007
- 沈四宝·王秉乾 『中国对外贸易法』, 法律出版社, 2006
- 曾令良·陈卫东, “论WTO一般例外条款(GATT第20条)与我国应有的对策”, 法学论坛, 2001
- 『财经报道』, 2004年5月31日

-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 - 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 WTO/DS58/AB/R, adopted 6 Nov. 1998
-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 - 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 WT/DS2/AB/R, 29 April 1996

- 고준성,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 법무부, 2003
- 양평섭, “최근 중국의 수출관련정책 변화와 한·중 교역에의 영향”, 중국이슈 리포트, 제 2006-29호, 2006.11.23
- 오용석, 『현대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나남출판, 2004
- 이춘삼, 『중국통상법』, 대왕사, 2004

「WTO 협정」

「NAFTA 협정」

중국 「WTO가입의정서」

상무부, 해관총서 공고 2007년 제 101호

彭岳, “岳中欧焦炭出口配额风波的法律方法分析”

<http://ibdaily.mofcom.gov.cn/show.asp?id=77299>

(검색일: 2008.3.10)

『在線國際商報』, “糧食制粉實行出口配額許可証管理”

<http://www.wtolaw.gov.cn> 2008-01-02 (검색일: 2008.3.27)

<http://www.bjwto.gov.cn/etu/newshtml/01/20050222094022.asp>

(검색일 2008.3.13)

## ABSTRACT

### **Analysis of the Validity of the China's Resource Export-Quota Restrictive Measures under the GATT/WTO**

Yoo, Ye Ri

China's 「Foreign Trade law」 16.4 revised in 2004 like 「Foreign Trade law」 16.2 in 1994 is still stipulated resource restriction to protect domestic resources and it does not satisfy the introduction of article 20 and section (g) of GATT 1994. Through an interpretation of related regulations and China-EU cokes dispute, the paper points out that China's 「Foreign Trade law」 16.4 has no validity of the introduction of article 20 and section (g) of GATT 1994. Comparing China's 「Foreign Trade law」 16.4 to GATT 1994 20(g), China's 「Foreign Trade law」 16.4 does not include important conditions of GATT 1994 20 introduction such as not being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and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For example, based upon China's 「Foreign Trade law」, if she restricts or prohibits important natural resources that Korea mainly relies on China, it will effects not only trade between two countries but also our lives and securities. Hence, it is highly time to analyze China's the Validity of the China's Resource Export-Quota Restrictive Measures under the GATT/WTO. In the process of resolving China-EU cokes dispute in 2004, ministry of Commerce of China shows well its characteristics of dispute settlement and also we can find out EU's logical countermeasures. Therefore, because of the high possibility of disputes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area of natural resources, Korea needs to pay attention to the China's resource protecting policies, and if it violates GATT 1994 20 introduction and (g), we should consider to sue China to WTO. The

paper believes that it will play an important role as an aggressive demand and effect on amendment of China's 「Foreign Trade law」 in the long term.

Key Words: China's 「Foreign Trade law」 16.4, GATT 1994 20(g), resource export restriction measures, China-EU coke dispute